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동원자원소요심의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동원자원소요심의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주요내용

가. 용어정비(전문 일괄변경)

- 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시행령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서 사용한 ‘자원관리 주무부처’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원관리주관기관’으로 대체

나. 인력자원 정의 정비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 1) 해당조항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 내 연계 조항에 반영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풍구조문대비표, 별첨

동원자원소요심의규정 일부개정령안

동원자원소요심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5호 중 “ 자원관리 주무부처”를 “자원관리 주관기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2조제1항및제2항”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9조제1항, 제2항 중 “ 자원관리 주무부처”를 “자원관리 주관기관”으로 한다.

제10조 본문과 제1호 중 “ 자원관리 주무부처”를 “자원관리 주관기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3항 중 “ 자원관리 주무부처”를 “자원관리 주관기관”으로 한다.

제12조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뿡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u>비상대비자원 관리법</u> 시행령-----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 <u>비상대비에 관한 법률</u> ---」 -----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u>비상대비 자원관리법</u> ----- ----- 심의·조정에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 <u>비상 대비에 관한 법률</u> 」----- -----.
제4조(심의사항) ----- 5. <u>자원관리 주무부처</u> 의 조정에 관한 사항	제4조(심의사항) ----- 5. <u>자원관리 주관기관</u> ----- -----
제6조(자원) ① 동원자원은 <u>비상대비 자원관리법</u>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대상자원중에서---자원으로 한다.	제6조(자원) ① ----- <u>비상대비에 관한 법률</u> 」--- 제1호 및 제2호.- -----.
제9조(소요계획서 제출) ① ----- ----- <u>자원관리 주무부처</u> 와 행정안전부에 각각 제출한다. ② ----- <u>자원관리 주무부처</u> 에 제출하고, <u>자원관리 주무부처</u> 는 이를 종합하여 행정안 전부에 제출한다.	제9조(소요계획서 제출) ① ----- ----- <u>자원관리 주관기관</u> 과 -----. ② ----- <u>자원관리 주관기관</u> -----, <u>자원관리 주관기관</u> 은 ----- -----.
제10조(소요 심의자료 제출) <u>자원관리 주무부처</u> 및 소요부처는 ----- --- 제출한다. 1. <u>자원관리 주무부처</u> 는 수급판단 서와 기타 소요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10조(소요 심의자료 제출) <u>자원관리 주관기관</u> ----- -----. 1. <u>자원관리 주관기관</u> 은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자원과	
연 락 처	(044) 205 - 4340